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73호
----------	---------

제출년월일 2025. 9. 3.
제출자 황성석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시 의정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와 여비 미지급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 나. 징계처분 종류에 따라 의정비 지급제한 조문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고
- 나. 조례안 예고기간 : 2025. 9. . ~ 2025. 9. .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 2) 관련부서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을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u>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u>의정활동비 및 여비를</u> 소급하여 지급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2조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u> ----- ----- ----- <u>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u> ----- -----.</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u>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u>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u>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p>1. <u>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p>2. <u>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u></p> <p>3. <u>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u></p> <p>③ <u>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u></p>

< 지방자치법 >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9)

제3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2020.12.31., 2022.11.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0.2.14., 2020.12.31., 2021.12.31., 2022.11.16., 2023.9.27.,2025.3.1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1.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연 도	지 급 액
2023년	월 2,772,970원
2024년	월 2,820,110원
2025년	월 2,890,610원
2026년	'25년 월정수당에 '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별표 2] <개정 2008.1.4., 2024.5.14.>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금 액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